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09. 5. 21.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법령입안 심사기준 입법례에 따라 일부 조문에 대한 미비점 및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를 신설함. (안 제2조)
- 나. “제1항, 제2항, 제3항”을 각각 “제1호, 제2호, 제3호”로 함. (안 제2조)
- 다.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함. (안 제5조제5항제2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본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를 신설한다.

안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각각 “제1호, 제2호, 제3호”로 한다.

안 제5조제5항제2호 중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신설></p> <p>①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p> <p>② “평생학습센터”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정책개발·평생교육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p> <p>③ “평생교육사”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에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법 제25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 ----- -----</p> <p>2. ----- ----- ----- -----</p> <p>3. ----- ----- ----- -----</p>
<p>제5조(구성 및 위원)</p> <p>① ~ ④ (생략)</p> <p>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 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1. (생략)</p> <p>2. 위촉직 위원 :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u>경험이 풍부한</u> 자 등</p> <p>⑥ ~ ⑨ (생략)</p>	<p>제5조(구성 및 위원)</p> <p>① ~ ④ (원안과 같음)</p> <p>⑤ ----- ----- -----</p> <p>1. (원안과 같음)</p> <p>2. ----- ----- -----<u>경험이 풍부한</u> 자</p> <p>⑥ ~ ⑨ (원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9. 5.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
- 나. 평생교육협의회 추진 체제를 정비하여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현행 제명 “평생학습진흥 조례”를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변경.
- 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1조의 “평생교육법 제9조”를 “제5조”로, 제2조 제3항의 “평생교육법 제18조”를 “제25조”로 변경.
- 다. 평생교육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평생교육 정의의 이해를 돕고자 함.
- 라. 상위법 개정에 따라 “평생학습협의회”의 명칭을 “평생교육협의회”로 하고, 구성인원을 현행 “15인 이내”에서 “12인 이내”로,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
- 마. 평생학습협의회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 1) 당연직 위원 :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 2) 위촉직 위원 :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바. 현행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변경하여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과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평생교육관련 서비스를 포괄하는 의미로써 평
생교육을 사용하고자 함.

3. 개정근거 : 평생교육법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09. 4. 2 ~ 4. 21)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9. 4. 30)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라.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①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교육·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② “평생학습센터”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정책개발·평생교육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평생교육사”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에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법 제25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및 본문 중 “평생학습”을 각각 “평생교육”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평생학습협의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평생학습”을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으로, “마포구평생학습협의회”를 “마포구평생교육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

호부터 제3호까지의 “평생학습”을 각각 “평생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5인”을 “12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2. 위촉직 위원 :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같은 조 제6항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잔여임기”를 “남은 기간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 중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평생학습실무협의회”를 “평생교육실무협의회”로 한다.

제9조 중 “국민의 평생학습”을 “법 제21조에 따라 국민의 평생교육”으로 한다.

제10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 중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학습참여자”를 “교육참여자”로 하며, “평생학습단체”를 “평생교육단체”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① “평생학습”이라 함은 <u>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u></p> <p>② “평생학습센터”라 함은 평생학습에 대한 연구·정책개발·평생학습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p> <p>③ “평생교육사”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p>	<p>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①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u>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u></p> <p>② “평생학습센터”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정책개발·평생교육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p> <p>③ “평생교육사”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에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법 제25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평생학습의 진흥)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u>평생학습</u>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노력한다.</p> <p>② 구청장은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u>평생 학습</u>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u>평생학습</u>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p>	<p>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u>평생교육</u>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노력한다.</p> <p>② 구청장은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u>평생 교육</u>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u>평생교육</u>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p>
<p>제2장 <u>평생학습협의회</u></p>	<p>제2장 <u>평생교육협의회</u></p>
<p>제4조(설치 및 기능) ① <u>평생학습</u>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u>평생학습협의회</u>(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평생학습</u> 기본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u>평생학습센터</u> 운영 및 <u>평생학습</u> 관련 단체·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u>평생학습</u>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p>제4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4조에 따라 <u>지역주민</u>을 위한 <u>평생교육</u>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u>평생교육협의회</u>(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평생교육</u> 기본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u>평생학습센터</u> 운영 및 <u>평생교육</u> 관련 단체·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u>평생교육</u>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현행	개정안
<p>제5조(구성 및 위원)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된다.</p> <p>③~④ (생략)</p> <p>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기관 및 시설의 장 또는 사회단체 대표자, 학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p> <p>⑥ 구청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면직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p> <p>⑧ (생략)</p> <p>⑨ 협의회는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기타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5조(구성 및 위원)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된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1. 당연직 위원 :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 학무국장</p> <p>2. 위촉직 위원 :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p> <p>⑥ 구청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면직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p> <p>⑧ (현행과 같음)</p> <p>⑨ 협의회는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그 밖의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실무협의회) 평생학습과 관련된 기관·시설간의 협력증진과 협의회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p>	<p>제7조(실무협의회) 평생교육과 관련된 기관·시설간의 협력증진과 협의회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평생학습센터</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평생학습센터</p>
<p>제9조(설치) ① 구청장은 구민의 평생 학습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② (생략)</p>	<p>제9조(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7. 기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10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7.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현행		개정안
<p>제12조(운영비 등 지원)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 및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4조(수강료 징수 등)</p> <p>① (생략)</p> <p>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학습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협의회 의견 고려하여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12조(운영비 등 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참여자 및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4조(수강료 징수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협의회 의견 고려하여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